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2005. 12. 16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각종 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05.8.4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반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예산조치 : 별첨
- 다. 입법예고 : 2005.11.7~11.27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라.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편의제공)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편의제공) ①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를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p>	<p>제12조(편의제공) ①-----</p>
<p>②(<u>신 설</u>)</p>	<p>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④ 생략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간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별첨】

2006년도 예산(비용) 추계서

분야별	소요예산	비고
직무능력배양	88,440천원 ○ 향토지 보급 : 88,440천원 - 10천 원×737명×12월=88,440천 원	
근무여건개선	9,581천원 ○ 상해보험료 : 9,581천 원 - 13천 원×737명=9,581천 원	
사기진작	36,850천원 ○ 반장활동비 : 36,850천 원 - 50천 원×737명=36,850천 원	
총계	134,871천원	